

제 22 장 최종규정

제 22.1 조 부속서, 부록 및 각주

이 협정의 부속서, 부록 및 각주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.

제 22.2 조 개정

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개정에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다. 개정은 양 당사국이 각자 적용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통보를 교환한 후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날에 발효한다.

제 22.3 조 세계무역기구협정의 개정

양 당사국이 이 협정에 통합한 세계무역기구협정의 규정이 개정되는 경우, 양 당사국은 제22.2조에 따라 적절한 경우 이 협정의 관련 규정의 개정을 검토하기 위하여 협의한다.

제 22.4 조 발효

이 협정은 양 당사국이 각자의 법적 요건을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최종 서면통보의 접수 30일 후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다른 날에 발효한다.

제 22.5 조 종료

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, 이 협정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이 협정의 종료를 희망함을 서면으로 통보한 날부터 180일 후에 종료된다.

제 22.6 조 잠정적용

1. 제22.4조를 저해함이 없이, 한국이 제22.4조에 따른 자국의 비준 절차의

완료통보를 한 반면 콜롬비아는 그렇게 하지 아니한 경우, 이 협정은 콜롬비아가 「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」(1969)과 콜롬비아 헌법에 따라 잠정적으로 이 협정을 적용한다는 자국의 결정을 한국에 통보한 날의 다음 첫째 달의 첫째 날부터 잠정적으로 적용된다.

2. 발효되기 전 제1항에 따라 양 당사국에 의해 이 협정이 적용되는 경우, 이 협정의 조항에서 이 협정의 발효일에 대한 언급은 제1항에 따른 잠정적용일을 언급하는 것으로 양해된다.

3. 제1항 및 제2항을 조건으로,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한 서면 통보에 의해 잠정적용을 종료할 수 있다. 그러한 종료는 통보 후 첫째 달의 첫째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.

제 22.7 조 정본

이 협정의 한국어본, 스페인어본 및 영어본은 동등한 정본이다. 불일치가 있는 경우, 영어본이 우선한다.

이상의 증거로, 아래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.

2013년 2월 21일 서울에서 한국어,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.

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

콜롬비아 공화국 정부를 위하여